



성 전환자의 성의 선택문제 (性轉換者)



이 준 상

일전에 모대학 부속병원 의료팀은 여성을 남성으로 전환수술 하였는데, 계속적인 관찰 결과 남성으로서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여 세인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성 전환수술은 세계 의료계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의술이 된지 오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몇건 성공적인 수술을 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한 성전환수술은 대부분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 전환수술이었고,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환은 처음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성 전환수술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는 크게 헌법상의 문제와 개별법적인 문제가 논의된다.

먼저 헌법적인 문제로 우리 헌법에서 선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

권(헌법 제10조)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대 국가의 헌법은 대부분이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과연 인간의 후천적인 성의 선택권이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는 없는 것 같으나 이제까지의 지배적 견해는 성의 선택권도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실현시키는 것이라 하고 있다.

즉 선천적으로 취득된 성에 의한 무가치한(?) 삶의 영위보다는 후천적으로나마 자기가 원하는 성의 취득에 의해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

그리하여 의료계에서도 과연 성 전환수술을 인정하는 것이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아닌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였었다. 그 결과 의료계 자체에서 성 전환수술의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그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성 전환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 전환을 원하는 자가 성 전환수술 요건에 부합되어 성 전환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적·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이러한 성 전환수술을 뒷받침하여 주어야만 그 의의가 있다 하겠는데 현실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성 전환수술자의 성의 변경문제에 관해 우리 법원이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 전환수술을 한 자-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였음-가 법원에 호적상의 성변경을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법은 성의 선택권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한 문제로 보고 그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반대로 수원지법에서는 성의 선택은 자연법칙에 위배된다 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던 것이다.

성 전환수술자에게 성의 변경이 법률상-호적법 또는 주민등록법상, 더 나아가 병역법상-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관계법 등에서 발생된다.

즉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자에게 성의 변경이 법률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남성이고, 신체적 외형상으로는 여성인 까닭에 병역문제 등이 복잡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

성 전환을
원하는 자가
성 전환 수술요건에
부합되어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성 전환수술을
뒷받침해 주어야만
의의가 있다.



제가 성 전환수술자에게 발생하는 개별법적인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성 전환수술자가 만약 결혼을 한다치면 법률상으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 해진다는 결론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사실상의 부부를 존재케 한다는 기이한 현상이 제기된다 하겠다.

성 전환수술자에 관한 법적문제를 또 다른 법률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즉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을 보면 강간죄의 객체를 종전의 '부녀'에서 '여성'으로 변경시켰는데 그렇다면 성 전환수술자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면 외형적으로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남성인 까닭에 개정 형법 하에서는 성 전환수술자,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한 자를 강간한 경

우에는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다른 문제를 보면 아직 세계 의학계에 보고 된 바 없지만 성 전환수술자가 낳은 2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취급을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하겠다. 현대의료수준의 발달과정을 보면 이에 관한 해결도 그리 멀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행정 실무자나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성 전환수술을 행한 자가 현재까지는 극소수이고 실제적으로도 위와 같은 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성 전환수술을 한 자는 그 수가 무시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관한 의료수준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성 전환수술자에게 있어 성의 변경이
호적법, 주민등록법, 병역법상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 수가 미미하지만 의학적 판단으로는 성 전환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고 있는 수도 이백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볼 때 이에 관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다.

인간의 행복추구권 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떤 인위적인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는 인간에 의해 느껴지고 평가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률 등 제도적 장치 등에 의해 인간의 행복추구권 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이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간 개개인이 느끼지 못하고 향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행복을 빼앗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혹자는 시기상조라 일축할는지 모르겠으나, 의학을 담당

**세계적으로
성 전환수술을 한
사람은
그 수가 무시 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관한
의료수준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에 조심스레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동의 관심이 증가할 때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72

〈필자=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장〉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합니다.

지나친 외식편중은 식생활의 균형을 깨고 과소비를 조장합니다.

연간 10조원이 넘는 돈이 외식하는데 지불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38% 수준이고 국민 총생산의 6.2%이며 매년 평균 30%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각종 모임이나 동창회, 생일 축하연 등도 값비싼 음식점에서 호화판으로 치루는 과소비의 풍조마저 있어 국민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검절약하고 낭비없는 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생활덕목입니다